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입학연도의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리고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할 경우,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수립·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해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0. ~ 4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3(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) ①

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(이하 이 조에서 “의학전문대학원”이라 한다)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할 경우,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수립·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30조의3(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) ① <u>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(이하 이 조에서 “의학전문대학원”이라 한다)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u> ② <u>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할 경우,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수립·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해야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97